

# 이 환 완 료 통 지 서

(통산기업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신이 가입하고 있었던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탈퇴일 시금 상당액 혹은 잔여재산의 이환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통산기업연금을 지급개시연령부터 지급하게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연금연합회

1. 성명
2. 기초연금번호
3. 탈퇴일시금상당액 혹은 잔여재산을 연합회로 이환한 확정급부기업연금의 명칭  
(대표사업소명칭 혹은 기업연금기금명)
4. 이환된 탈퇴일시금 상당액 혹은 잔여재산      엔
5. 장래 지급될 통산기업연금액 (연간 지급예정액)  
연금액      엔
6. 지급개시 연령
7. 보증기간

## 통산기업연금은

### 1.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 ① 상기 「6.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 ② 60세 이상이면 「6.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연금의 지급을 희망했을 때  
(단 예정보다 앞당긴 지급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됩니다)

### 2. 연금청구 절차는

연금의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상기의 「6.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엽서 등에 연금의 청구서의뢰라고 기입하고, 또한 상기 1, 2의 사항에 생년월일, 주소를 함께 쓰신 후 기업연금연합회로 송부해 주십시오.

※문의는 이하의 □를 잘라내어, 수신인에 붙이신 후 우송으로 부탁드립니다.

〒105-8772  
東京都港区芝公園2-4-1  
芝パークビルB館 10階  
企業年金連合会 年金サービスセンター  
年金相談室 行

**JAPAN**